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인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
- 나. 당연직 위원들의 중복위원 활동 및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고, 관련전문가 및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2조 중 “영 제23조”를 “영 제12조”로 함.
- 나. 제3조제1호 중 “영 제24조제1항”을 “영 제12조제1항”으로 함.
- 다. 제6조제4항 중 “문화체육과장, 건설방재과장, 도시과장”을 “미술장식품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9.08.19 ~ 2009.09.08, 제출의견 없음.
- 마.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바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영 제23조”를 “영 제12조”로 한다

제3조제1호 중 “영 제24조제1항”을 “영 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문화체육과장, 건설방재과장, 도시과장”을 “미술장식품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
제12조 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, 주차장·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 및 공조실(공조실)의 면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]이 1만 제곱미터(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) 이상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,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3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·집회장 및 관람장
4. 판매시설
5. 운수시설(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
6. 의료시설 중 병원
7. 업무시설
8. 숙박시설
9. 위락시설
10. 방송통신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② 법 제9조제1항에서 "건축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.

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건축 비용"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

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)을 말한다. 다만,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미술장식"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회화·조각·공예·사진·서예 등 조형예술물
2. 벽화·분수대·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

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.